

- 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관련 -
광주광역시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(※ 재심의결과 기관장 경고 “취소” 처분 반영)

I. 감사개요

1. 감사명 : 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관련 특정 감사
2. 감사범위 : 지하철 역사 연결통로 개설 업무 적정성 등
3. 감사기관 :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
4. 감사기간 및 감사반
가. 감사기간 : 2018. 7. 31. ~ 8. 3.
나. 감사반 :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명

II. 감사결과

1. 지적사항 : 1건(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처리 부적정)
2. 처분사항 : 행정상 처분 1건, 신분조치인원 1명(당초 2명 대비 △1명)

행정상 처분		신분조치인원	
계	주의	계	증징계
1건	1건	1명※	1명

※ 당초 “기관장 경고” 가 재심의결과 취소되어 1명 감소

III. 지적사항 조치결과

1. 조치결과 요약 : 지적사항 조치완료(기관장경고는 재심의 결과 취소)
2. 기준일(재심의 결과 통보일) : 2018.12.03.(월)

첨부 :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역 1부

[첨부]

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역

연번	처분	조치할 사항	조치결과	진행구분
1	행정상 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☆☆☆☆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서(20○○.○○.○○.)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○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 ○ 「업무협약 관리기준」을 준수하도록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업체에 연결통로 확약 광고행위 중단 및 광고로 인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공문 통보 ○ 대외기관 업무처리에 대한 역장 사무분장을 조정하였고, 문제가 된 업무협약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(법적 분쟁시 유관부서와 적극 대응) ○ 전체 역장 사례교육과 민원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업무협약 관리기준 준수 공문 시행 	완료
	중 징 계 처 분 요 구	○ 연결통로 관련 업무협약자 ○○○ '중징계' 처분 요구	○ 2018. 10. 23일자 "정직 3월" 처분	완료
	기관장 경고 (신분상조치) ※ 취소처분	○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'기관장 경고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심의 신청결과 "취소" 처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소사유(감사위원회 판단) : 해당 민원처리가 팀장전결로 처리되고 사장보고가 없어 관련사항을 사장이 인지할 수 없었고, 개인 일탈행위인 점,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고 우려된다고 한 점 등으로 판단하여 기관장 경고는 과도하다고 인정(감사위원회-12584호, 2018.12.03.) 	취소 처분